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 및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신설 (제44조2제2항제 11호 신설)

- 1)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명문화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(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.

11.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44조(업무의 위탁) ②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</u> <u>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	
연 락 처	(044) 203 - 3147